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의안 번호	793
----------	-----

제출년월일 : '99. 8.
제 출 자 : 안산시장

□ 제정이유

- 지방체육활동의 활성화와 체육복지 사회 실현의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86년 1월부터 운영하여온 직장운동경기부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정함.

□ 주요골자

- 가.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육상선수단, 탁구선수단을 둠 (안 제2조)
- 나. 단원의 정수 및 위촉기간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해촉사유를 규정함 (안 제3조, 제5조)
- 다. 단원에게 보수 및 훈련비등의 지급과 전국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우 선수 및 지도자에게 예산의 범위내 포상금을 지급할수 있도록 함 (안 제9조, 제10조)

□ 제정조례안 : 별첨

□ 참고사항

- 관련법규 ----- 국민체육진흥법 제 10조, 동법시행령 제17조
- 입법예고 ----- 기 간 : '99. 7. 6 ~ '99. 7. 26(20일간)
의견제시사항 : 없음
- 기타참고사항 ----- 수원시직장운동부설치조례,, 부천시직장운동부설치조례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설치및운영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의 설치 및 이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종목) 안산시청직장운동경기부에 육상선수단과 탁구선수단(이하 “선수단”이라 한다)을 둔다

제3조(구성) ①선수단은 단장, 부단장 및 단원으로 구성한다.

②단장은 기획실장, 부단장은 문화체육담당관이 되며 단원은 감독, 코치 (이하 “지도자”라 한다) 및 선수로 구성한다

③단원은 지방공무원법제31조의 결격사유가 없고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도자는 선수경험이 있는 자로서 당해종목의 경기지도자 자격증을 취득한 자
2. 선수는 전국규모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경력이 있는 자로서 대한체육회 선수 등록에 결격사유가 없는 자.

④단원의 정수 및 위촉기간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단장 등의 직무) ①단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선수단의 업무를 총괄하고, 단원을 지휘·감독한다.

②부단장은 단장의 명을 받아 단원 운영을 위한 행·재정적 실무를 지원하며, 단장이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감독은 단장의 명을 받아 선수를 지휘·감독하여 훈련 및 경기를 총괄하고, 우수 선수를 발굴 육성해야 한다

④코치는 감독을 보좌하며, 감독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

6 (부록)

제5조(단원의 해촉) 시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그 단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단원이 자의에 의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경우
2. 단원이 질병 또는 신체상 장애로 선수단 생활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3. 단원의 경기 성적이 극히 부진하고 향후 경기력 향상을 기대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4. 단원이 정당한 사유 없이 경기 또는 훈련에 태만하거나 불참할 경우.
5. 단원이 품위 손상등 기타 사유로 단원으로서 부적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6조(겸직금지) 단원은 시장의 사전 승인 없이 다른 직무를 겸직할 수 없다.

제7조(훈련) 단원의 훈련은 합숙훈련과 비합숙훈련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단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강화훈련, 전지훈련, 특별훈련 등을 실시할 수 있다.

1. 훈련은 합숙을 원칙으로 한다.
2. 비합숙훈련은 감독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실시할 수 있다
3. 단원의 훈련 장소는 감독이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8조(대회출전) 각종 대회에 출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9조(보수등의 지급) 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보수 및 훈련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0조(단원 포상금) 전국규모 이상의 대회에서 입상한 선수 및 그 지도자(감독, 코치)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당시 설치된 각 종목의 선수단은 이 조례에 의하여 설치 및 위촉된 것으로 본다.
- ③(폐지규정) 이 조례 시행과 동시에 안산시직장운동부설치운영규정은 이를 폐지한다.